

#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4. 20.

제안자 : 이필용의원 외

## □ 수정 이유

-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므로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은 교육감이 수립·시행토록 하고,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,
- 조례안을 제정·운용함에 있어 낮은 재정자립도와 집행부의 재정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정하고자 함.
- 또한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은 시장경쟁 원리를 왜곡시키고 납품독점의 소지가 있으며,
- 아울러 조례안 체계나 문구사용에 있어 불합리적이거나 의미전달이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조, 안 제2조제2호,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한 “우수농산물”을 “우수 농·수산물”로 변경하고, 안 제3조제2항에서 “우수 농·수산물”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”로 규정함.

- 안 제3조제1항에서 “학교급식”이라 함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,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함.
- 안 제4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범위에 영양사단체를 추가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.(안 제8조)
- 지정판매업자관련 규정을 삭제함.
-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0조)

#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과 국민식생활 개선”을 삭제하고, “우수농산물”을 “우수 농·수산물”로 한다.

안 제2조중 “도지사, 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제2호중 “농산물”을 “농·수산물”로 한다.

안 제3조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학교급식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
② “우수 농·수산물”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.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“급식학교”라 함은 제5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④ “식품비”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음식물의 제조·가공에 사용되는 농·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.

**제4조(자치단체 등의 임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며,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충청북도에 소재하며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로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3.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**제6조(경비지원)**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신청)**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,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급식학교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
3. 우수 농·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
4. 급식시행계획
5.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②신청시기, 절차,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)** ①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
2.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
3. 충청북도의회 의원
4. 학부모단체
5. 교사단체
6. 농민단체
7. 사회단체
8. 영양사단체

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지원계획
2.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지도·감독)**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도모하고,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(삭제) ----- ----- 우수 농수산물 ----- -----</p>
<p>제2조(목표)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도지사,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·배분·소비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</li> <li>3.4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목표) ----- -----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농·수산물 ----- -----</li> <li>3.4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/ol>
<p>제3조(정의) (신설)</p> <p>① "학교급식"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"학교급식"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②“우수농산물”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·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.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“우수 농수산물”----- -----농수산물----- ----- -----</p>
<p>③“지정판매업자”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.</p>	<p>③“급식학교”라 함은 제 5조의 지원대상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</p>
<p>④“지원대상자”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.</p>	<p>④“식품비”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음식물의 제조·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.</p>
<p>⑤“식재료”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4조(학교급식의 형태)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의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과정과 배식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5조(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충청북도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자치단체 등의 임무) ①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②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학교급식시설설비와 우수 식재료 사 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충청북도지사, 시군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사 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④충청북도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식재 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⑤충청북도지사,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식재료 검수 및 의견제시 등 학교급식 에 관한 개별 학부모와 학생들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 검수 참여절 차, 의견제시의 절차 및 보장방법에 관 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 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.</p> <p>③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 하며,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
<p>제6조(지원대상 및 우선순위) ①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한다.</p> <p>②지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 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벽지지역 학교</li> <li>2. 영세보육시설</li> <li>3.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교</li> <li>4. 기타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학교</li> </ol>	<p>제5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에 소재하며,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 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2제2호 내지 제 5호 에 의한 학교</li> <li>2. 「초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 체부설 중고등학교</li> <li>3.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</li> </ol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지원방법)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②도지사는 시·군 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.</p>	<p>제6조(경비지원)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지원신청)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 여성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시·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원대상자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</li> <li>2. 급식시설, 설비의 위치와 규모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</li> <li>5. (생략)</li> </ol> <p>(신설) (신설)</p>	<p>제7조(지원신청)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,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급식학교의 명칭----- ----- (삭제)</li> <li>2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3. 우수 농수산물 ----- ----- -----</li> <li>4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5.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신청시기, 절차,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9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) ①충청북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.</p>	<p>제8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) ①도지사는 ----- -----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-----하여야--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②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-2. (생략)</p> <p>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</p> <p>4. 학부모단체 1인</p> <p>5. 교사단체 2인</p> <p>6. 농민단체 2인</p> <p>7.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추천한 2인</p> <p>8. (신설)</p> <p>③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1인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1.-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충청북도의회 의원</p> <p>4. 학부모단체</p> <p>5. 교사단체</p> <p>6. 농민단체</p> <p>7. 사회단체</p> <p>8. 영양사단체</p> <p>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</p> <p>1.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</p> <p>2. 지원규모</p> <p>3. 지정판매업자의 선정</p> <p>4.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9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</p> <p>1. 지원계획 (삭제) (삭제) (삭제)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1조(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) ①</p> <p>지정판매업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.</p>	<p>(삭제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②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판매업자의 상호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</li> <li>2.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</li> <li>3.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</li> <li>4.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 12조(지정판매업자의 의무) ①지정판매업자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충청북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④충청북도지사는 지정판매업자가 제 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.</p> <p>⑤동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간 판매업자 지정을 할 수 없다.</p>	<p>(삭제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 13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, 지원금 사용내역을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을 인터넷 드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충청북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 14조(규칙의 제정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(삭제)</p> <p>제10조(지도감독)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